<u>대부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 사유</u>(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6항 관련)

- 1.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
- 2.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
- 2의2. 제4조를 위반하여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선임한 경우
- 3. 제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
- 4.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"대부" 또는 "대부중 개"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,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 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
- 5.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,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교부한 경우
- 6.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7.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
- 8.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
- 9.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
- 10.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·재산 및 부채 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
- 11.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
- 11의2. 제7조의3을 위반하여 총자산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
- 12.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자를 받은 경우
- 13.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14.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
- 15.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16.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17.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 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경우

- 17의2.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 업자나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 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
- 17의3.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경우
- 17의4. 제9조의7을 위반하여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18.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
- 18의2.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시하지 아니 한 경우
- 19.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
- 20.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 료를 받은 경우
- 20의2. 제11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증금을 예탁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
- 21.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
- 22. 제12조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
- 23. 제12조제5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
- 24.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,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경우
- 25. 그 밖에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